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안)〉

-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한다.
- ②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70일 이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인증이 취소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¹⁵⁾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능형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 〉

- ① 법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건축물 3등급 건축물: 100분의 3
 2. 지능형건축물 2등급 건축물: 100분의 5
 3. 지능형건축물 1등급 건축물: 100분의 10
- ② 법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건축물 3등급 건축물: 100분의 3
 2. 지능형건축물 2등급 건축물: 100분의 5
 3. 지능형건축물 1등급 건축물: 100분의 10

15) 이러한 한시규정을 신설하되,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법령개정 또는 부칙을 통해 감면시한을 연장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